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구 미 시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반영하여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처리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다. 오·폐수의 유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6조)
- 라. 설치 부담금에 관한 사항(제17조~제19조)
- 마.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9조)
- 바.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9조)
- 사. 사업자 대표회에 관한 사항(안 제40조~제4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업무과, 하수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의2, 제49조의6 및 제51조에 따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비용부담계획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에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산업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산업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5. “폐수관로”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

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산업시설”이란 처리구역 내에 입주한 생산·연구·물류시설을 말한다.

8. “그 밖의 시설”이란 처리구역 내에 입주한 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말한다.

9. “비용부담계획”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수립하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말한다.

10. “설치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11. “사용료”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12. “유지관리비”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을 합한 비용으로서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운영·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운영자의 의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휘·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운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오·폐수의 유입

제8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

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운영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
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2항에 따른다.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
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
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사용 등의 신고)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 완료(최초
배출), 사용 중지, 재사용, 폐쇄 또는 구조 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해야 한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기기의 검·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오·폐수를 처리시설의 유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설치 부담금

제17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설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

2.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입주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으로 오·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사업자

제18조(설치 부담금 부과) ① 시장은 사업자가 배수설비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치 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규모 및 사업자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설치 부담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 이내 월별 분할

2. 설치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4개월 이내 월별 분할

3. 설치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6개월 이내 월별 분할

② 설치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하며,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부담금의 정산 및 재산정) 시장은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소요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설치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정한 설치 부담금이 이미 부과한 설치 부담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료

제20조(적용 범위) 이 장은 처리구역 내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의 산정·부과·징수 및 납부에 적용한다. 다만, 주거 및 상업시설 등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29조를 따른다.

제21조(사용료의 부담) ① 사업자는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 실적자료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산정·부과하고,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사업자의 폐업·도산 또는 대상 사업장의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4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시장 또는 운영자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월 3회 이상 측정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사고 및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기간 직전 4개월간의 월평균 용수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사용료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시장 또는 운영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지원) ① 시장은 사용료 수입으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승인된 비용부담계획 및 연간 유지관리비에서 사용료 수입을 공제한 부족액 범위에서 산정하되,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용료 단가가 1세제곱미터(m^3)당 1,5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③ 지원된 금액은 다음 연도 사용료 산정 또는 정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유지관리비 지원의 지급절차 및 정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추가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정 방법 및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배출부과금)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담 대상 및 분담비율은 오염원인, 오염부하량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금액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의 사용료 산정 또는 부과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부담) 그 밖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사용료 산정·부과·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등

제30조(적용 범위) 이 장은 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독촉,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등에 적용한다. 다만, 주거 및 상업시설 등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34조를 따른다.

제31조(독촉) ① 시장은 사업자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32조(가산금) 시장은 독촉을 받은 자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설

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3조(강제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제31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 부담금, 사용료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그 밖의 시설의 체납처분 등)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독촉,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즉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와 제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배수설비 등 시설 설치 의무 불이행)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수

설비 설치, 제13조에 따른 유량계·pH계 등 이 조례에 따른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직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 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4조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위반 사실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8조(운영자의 업무 수행)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명령, 비용의 부과·징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제9조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변경에 관한 기술검토
2. 제13조의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확인
3. 제16조의 배수설비 개보수에 관한 확인
4. 제24조의 오·폐수 산정 지원
5.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토 지원
6. 제37조의 의무 불이행 사항의 확인

7.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9조(시행규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자 대표회

제40조(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 대표회는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한
사업자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회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업자 대표회의 회의는 시장, 운영자 또는 사업자 대표회의 대표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건의 및 의견 제시
2. 시장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2조(의결) 사업자 대표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은 처리시설이 준공되어 시
장에게 이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시설이 시장에
게 이관되기 전에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
자는 제8조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
된 배수설비 및 유량계 등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
치된 것으로 본다.

사용료 산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산정공식

$$As = 0.9M \times \frac{Qi}{Qt} + 0.1M \times \frac{QOi}{QOt}$$

As : 업체별 사용료

M : 월간 유지관리비(운영비 + 시설개선충당금)

- ▶ 운영비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수선유지비 등)
 - 산업시설 외 시설 생활오수분(20.9%) 제외
- ▶ 시설개선충당금(F) = 총 공사금액 × 10/10,000(월간)
 - 총 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등
(단, 상업 및 주택지구 사업비 제외)
 -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 공사금액에 포함

Qt : 전업체의 오·폐수 배출량

Qi : 개별업체의 오·폐수 배출량

QOt : 전업체의 오·폐수 오염부하량

QOi : 개별업체의 오·폐수 오염부하량

- ▶ 오염부하량
 - 폐수 : (BOD+TOC+SS+T-N+T-P) × 배출유량
 - 오수 : (BOD+TOC+SS) × 배출유량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①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업소 및 침출수 등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공업용수 등) 사용량 $\times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times 100 \ell$ (기숙사 인원은 200ℓ)

○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②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배출업소 및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용료의 지원 등으로 배출업소의 수질 농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협의를 통해 채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배출업소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종류 (분류번호)			주생산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건물면적(㎡)			부지면적(㎡)			
신청 내용	폐수 배출량	㎡/일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BOD	T-N	TOC	T-P	SS	기타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오수 배출량	㎡/일					
변경 내용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승인 신청의 경우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합니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1. 변경 전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승인서
[] 변경승인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	폐수 배출량	m ³ /일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BOD	T-N	TOC	T-P	SS	기타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오수 배출량	m ³ /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5

배수설비 설치 []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오·폐수의 종류	공장오수[],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기타 폐수[]					
	배수관 규모	평균 관경		mm	길이		m
	배수관 위치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배수관 외 배수설비 설치	맨홀[], 스크린[], 계량기[], 기타()					
	배수설비 재질	배수관	PVC[], PE[], GRP[], PC[], 주철관[], 기타[]	물받이	PVC[], PE[], PC[], 기타[]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 실시방법			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 사용(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	승인 신청의 경우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1. 변경 전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승인서

[] 변경승인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	배수관 규모	평균 관경	길이
		mm	m
	배수관 위치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배수관 외 배수설비 설치	맨홀[], 스크린[], 계량기[], 기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사항	승인번호	승인 연월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 최초 사용, [] 사용 중지,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폐쇄, [] 구조 변경	
신고사유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 최초 사용 ☐ 사용 중지 위와 같이 배수설비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에 대해 신고합니다. ☐ 폐쇄 ☐ 구조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⑧ 생략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④ 생략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수량·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 ⑨ 생략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⑪ ~ ⑫ 생략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② ~ ⑤ 생략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2.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8. 생략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 26. 생략

③ 생략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 ⑪ 생략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
- 안 제21조 및 제2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따른 세입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4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
- 안 제21조 및 제2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사용료 수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사용료	1,303,050	1,371,670	1,440,290	1,508,910	1,577,530	7,201,450
	소계(a)	1,303,050	1,371,670	1,440,290	1,508,910	1,577,530	7,201,450
세출	○ 고정비	873,794	903,765	934,764	966,826	999,989	4,679,138
	○ 변동비	880,723	962,146	1,044,875	1,110,014	1,214,228	5,211,986
	○ 기타	482,866	510,124	538,004	562,546	595,666	2,689,206
	소계(b)	2,237,383	2,376,035	2,517,643	2,639,386	2,809,883	12,580,330
□ 총 비용(a-b)		△934,333	△1,004,365	△1,077,353	△1,130,476	△1,232,353	△5,378,880

-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3.43%)을 매년 적용하며, 약품비 등의 변동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3.12%)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 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237,383	2,376,035	2,517,643	2,639,386	2,809,883	12,580,33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237,383	2,376,035	2,517,643	2,639,386	2,809,883	12,580,330

5. 부대의견

- 운영자의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음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물량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환경관리과 폐수관리팀 우한솔(☎480-529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사용료	사 업 장	1,095,000	1,149,750	1,204,500	1,259,250	1,314,000	6,022,500
	그 밖의 시설	208,050	221,920	235,790	249,660	263,530	1,178,950
합계		1,303,050	1,371,670	1,440,290	1,508,910	1,577,530	7,201,450

2. 세출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고정비	인 건 비	793,061	820,263	848,398	877,498	907,596	4,246,816
	복 리 후 생 비	43,386	44,874	46,413	48,005	49,652	232,330
	기 타 경 비	37,347	38,628	39,953	41,323	42,741	199,992
	소 계	873,794	903,765	934,764	966,826	999,989	4,679,138
변동비	약 품 비	139,209	151,755	164,949	178,818	193,392	828,123
	연 료 비	7,233	7,459	7,691	7,931	8,179	38,493
	폐기물처리비	76,300	83,177	90,408	98,010	105,998	453,893
	수 선 유 지 비	39,904	43,500	47,282	51,257	55,435	237,378
	안 전 관 리 비	18,410	18,984	19,577	20,187	20,817	97,975
	안 전 점 검 비	25,578	26,376	27,199	28,048	28,923	136,124
	전 력 비	565,769	622,315	678,922	716,640	792,076	3,375,722
	식 종 비	8,320	8,580	8,847	9,123	9,408	44,278
	소 계	880,723	962,146	1,044,875	1,110,014	1,214,228	5,211,986
일 반 관 리 비		78,641	81,339	84,129	87,014	89,999	421,122
이 윤		183,316	194,725	206,377	216,386	230,422	1,031,226
손 해 배 상 공 제 료		17,511	18,057	18,621	19,202	19,801	93,192
부 가 세		203,398	216,003	228,877	239,944	255,444	1,143,666
합계		2,237,383	2,376,035	2,517,643	2,639,386	2,809,883	12,580,330

소 관 부 서		환경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정 찬 기
	팀 장	정 민 정
	담 당 자	우 한 솔 (480-5297)